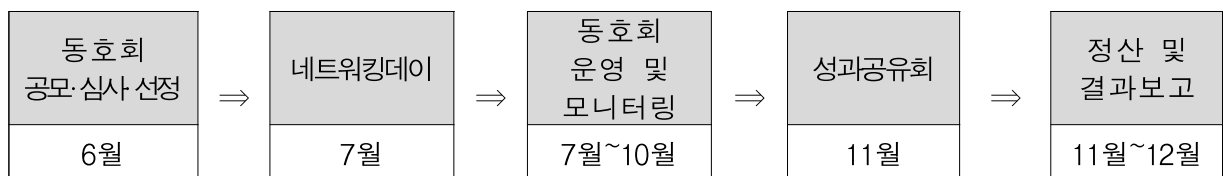


2023 전통문화 일상누림 동호회(동아리) 활동 지원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
 <2023 전통문화 일상누림> 사업의 일환으로 ‘전통’ 과의 접목을 통한
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동호회(동아리)를
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□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3 전통문화 일상누림
- 주최 : 문화체육관광부
- 주관 :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
- 사업기간 : 2023. 6. ~ 2023. 12.
- 사업목적 : 일상속에서 문화향유 활동을 이어가는 대학생 이상 성인 동호회(동아리)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확산에 기여
- 사업내용 : 다양한 분야의 생활문화 분야 동호회 중 규모가 크며 ‘전통문화’와 접목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동호회를 선정하여 운영 지원
- 사업 구성 : 동호회 선정 → 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→ 정산 및 결과보고



※ [참고자료] 2023 전통문화 일상누림

구분	생활문화분야 동호회(동아리) 전통문화 활동 지원	전통일상누림 프로그램
운영대상	총 5개 이하 동호회	병원(환자, 보호자 등), 다문화가정지원센터, 장애인센터 등 300명 이상 참여
운영내용	- 선정 동호회 활동 지원 - 네트워킹 데이 개최 및 교육 진행 - 성과공유회 개최	- 기관 및 대상별 전통문화(놀이) 체험 프로그램 운영

□ 공모 개요

- 공 모 명 : 2023 전통문화 일상누림 동호회(동아리) 활동 지원 공모
- 공모기간 : 2023. 06. 01.(목) ~ 2023. 06. 16.(금) (제출 기간 엄수)
- 지원대상 : 대학생 이상의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인 동호회(동아리) 및 법인 형태 비영리 목적 동호회

연령기준	- 만 19세 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 (2023년 기준 2004년생)
인원기준	- 회원 10인 이상 (회원 중 가족 구성원은 1명으로 기산)
지원기준	- 전국에서 활동하는 창단 1년 이상 동호회
분야기준	- 전통문화, 댄스, 합창, 미술, 영화, 악기 등 다양한 생활문화분야 * ‘전통문화’ 접목 필수 반영
활동기준	- 월 2회 이상 자발적인 모임이 8개월 이상 가능한 동호회
활동내용	- ‘전통’과 연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필수조건	- 공식 프로그램(네트워킹데이, 성과공유회) 필수 참여 ※ 장소 서울 - 전통문화 일상누림 사업 홍보 최소 3회 진행

* 신청 불가 동호회

- 특정 정치, 영리 목적, 종교 관련 동호회
- 단순 친목 도모, 일회성 모임
- 강좌를 수강하는 것 외에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호회
- 동호회 회원에게 일정한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동호회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-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동호회,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동호회
- 그 밖에 동호회 지원 사업과 성격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지원규모 : 총 5천만원(동호회별 최대 1천만원 차등 지원) / 총 5개 이하 동호회

* 동호회 활동 혜택

- ① 활동증명서 수여(수료기준 충족 시) ② 우수동호회 시상

□ 사업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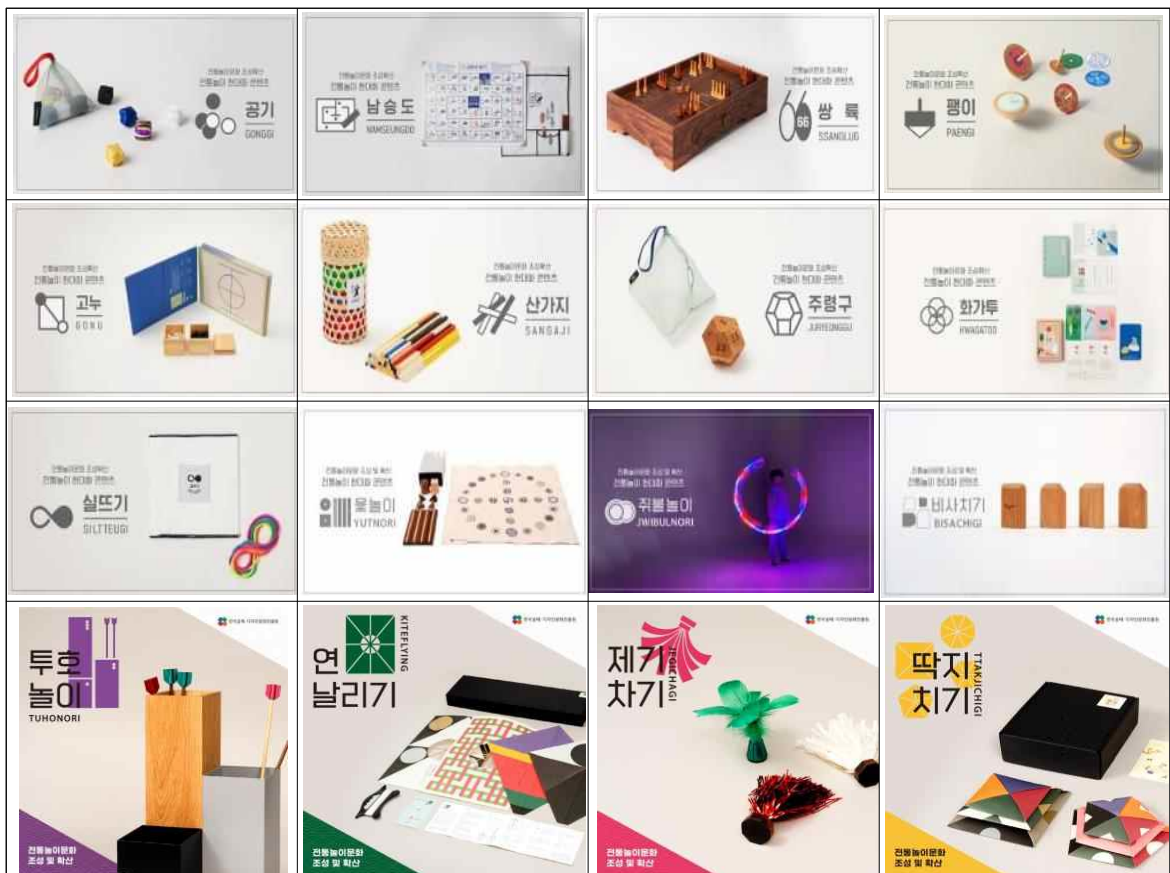
○ ‘전통’ 과 연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(택1)

① 기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‘전통’ 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

프로그램 예시
- (전시) 한지공예 동호회 작품 전시회 등 - (공연) 댄스 동호회 한복 입고 댄스 공연, 요리 동호회 한식 쿠킹쇼 등 - (교육/재능기부형) 전통놀이 교구 개발 및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※ 그 외 새로운 방식, 다양한 내용의 전통문화연계 프로그램 기획 가능

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개발한 ‘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’ 를 연계하여 프로그램 기획

- 상세 내용은 전통문화포털(kculture.or.kr) 참고 ※ 지원 품목 및 수량은 협의 필요
[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 목록]



○ 사업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

-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하나 프로그램은 사업 기간 내 10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, 세부 운영계획 상세히 작성
- 지역과 동호회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
- 동호회가 주체적,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마련
-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는 활동 계획 수립 필수
-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추진 과정 기록
- 기존 기획·운영하고 있는 행사와 연계 계획 시,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

* 지원 불가 프로그램

- 참여하는 회원 및 동호회 사례비 지급 행사
-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
- 정치, 종교, 상업적 목적 활동
- 본 사업 지원 예산을 상금 및 경품으로 지급하는 행사
- 공공성을 저해하는 개별 동호회 또는 개인의 활동

* 참여 주체별 역할

■ 동호회

-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확대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설계
- 동호회 욕구(네트워킹, 교류, 사업공유회 등)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타 지원 운영 권장
-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참여 확대 기반 마련

■ 동호회 회원

- 동호회 구성원들 간 건강한 관계 형성 및 소통을 기반으로 역량 강화 교육 진행
- 동호회의 다양한 경험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방법 모색 및 운영
- 동호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 공유

○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

- 다양한 방식의 온·오프라인 홍보 진행
- 홍보·인쇄물 제작 시 후원기관 명시

(후원: 문화체육관광부,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)

○ 주관기관 프로그램 필수 참여

- (네트워킹데이) 선발된 동호회 간 상호 교류 및 교육 진행
- (성과공유회) 전통문화 일상누림 동호회 지원사업 결과 공유
 -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회 진행(작품 전시 및 발표)
- 그 외 전통일상누림 프로그램 등 주관기관의 동호회 참여 요청 시 우선 참여

○ 주관기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

- 현장 모니터링, 각 만족도 조사, 자료 요청 및 수정 등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

□ 예산계획

○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 관련 집행항목을 준수하여 예산계획서 작성

(예산은 동호회별 최대 지원 금액인 1천만원으로 임의 작성)

※ 추후 동호회 선정 및 지원금 결정 시, 예산계획 수정 필요

구분	범 위
지원금	▪ 전통문화 일상누림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, 전문가 활용비 등 일반수용비 및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내용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 - (재료비) 전통문화 일상누림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단,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비는 사용할 수 없음 - (전문가 활용비) 생활문화 동호회 역량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, 특강 강사 활용비 - (제작비)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의 홍보물 제작비 - (임차료)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, 장비 등의 임차비 - (회의비)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회의비 ※ 2023년도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용

※ 사업비 중 상근직 인건비, 유형 자산취득비, 식사 등 업무추진성 경비는 집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 등이 조치 됨

□ 사업 추진 조건

○ 지원 동호회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 주최·주관 기관의 사업 및 예산 계획 조정이 있을 시, 사업 추진 방향이 조정될 수 있음

○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(사업기간, 인력, 내용, 예산 등의 중요 사항 변경) 발생 시 필히 협의하여야함

○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법규(저작권, 지적재산권 등)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, 본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제 권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, 적용하여야 함

* 지원금 취소 경우

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-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동호회가 법령의 규정, 지원금의 교부 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해당 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
- 지원 동호회가 지원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수행을 중단할 경우
- 주관기관의 사전 동의 및 승인 절차 없이 지원 내용을 변경·집행한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
-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동호회의 경우(단, 대표권이나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동호회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(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
III

접수 및 심사 계획

□ 접수 방법

- 접수기간 : 2023. 06. 01.(목) ~ 06. 16.(금)
※상기 일시에 메일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2023tradition@gmail.com)
- 제출서류 :
 - 공모신청서 일체(사업계획서, 예산집행 계획서)
 - 개인정보 동의서
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
 - [자유양식] 포트폴리오(동호회 이력, 실적, 사진 필수 포함)
 - [선택사항] 활동 영상(mp4, avi)
※ 자유양식 이외 작성한 서류 제출 및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능
- 유의사항 :
 -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 - 접수기간 내에 모든 서류 제출 필수
 -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※ 메일 및 압축 파일명 : [2023 전통문화 일상누림 동호회 지원] 동호회명

□ 심사 일정

- (1차) 서류심사 : 2023. 06. 17(토) ~ 06. 21(수) ※발표: 06.23(금) 예정
- (2차)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 : 2023. 06. 28(수) 예정
- (최종) 선정 결과 발표 : 2023. 06. 30(금) 예정
※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심사 방법

- 심사방법: (1차) 서류심사 (2차)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
 - 서류심사: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 수의 2배수 이내 합격
※ 서류심사 전 내부 적격 심사 별도 진행
 - ※ 서류심사 합격 동호회는 2차 심사 하루 전 발표 자료(프레젠테이션)를 작성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(별도 안내 예정)

-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: 총 5개 이하 동호회 선정
 - 총 20분 진행(발표 10분 + 질의응답 10분)
 - 프레젠테이션(PPT)는 최대 10페이지 이내 작성
 - 원론적인 사업 개요 및 목적 제외,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
- 선정기준: 70점 이상 득점한 상위 동호회 선정
- 선정발표: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및 개별공지
- 심사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사업의 이해도 및 참여도	○ 전통문화 일상누림 사업 취지와와의 적합성 및 이해도 ○ 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절성 ○ 적극적인 참여 의지	20
동호회의 수행능력	○ 신청 동호회의 규모 및 전문성, 지속적인 활동 여부 ○ 신청 동호회의 특징점 및 유사사업 운영 경험 보유 여부 ○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별 담당자 배치 여부	25
프로그램 기획력	○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식의 독창적 프로그램 기획력 ○ 프로그램 홍보방안 및 실행계획의 독창성	35
사업계획의 충실성	○ 사업목표에 따른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세부운영계획의 체계성 ○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	20

□ 문 의 처

담 당 자	연 락 처	이 메 일
운영 사무국	02-3144-0441	2023tradition@gmail.com

※ 빠른 응대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 문의 권장

※ 문의 가능시간 : 평일 10:00-17:00 *점심시간(12:00-13:00) 제외

□ 예산계획 관련 안내

-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집행 규정 및 정산 지침 준수
- 지원금 예산 항목은 ‘운영비’와 ‘업무추진비’만 지출 가능하며, 자본적·경상적 경비 지출 불가
 - 자본적 경비: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·기계 등 시설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신·전화 설비 등의 비용
 - 경상적 경비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, 공과금 등의 비용
-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자부담으로 지출

□ 예산 편성 기준

목	세목	적용범위	정산시 첨부 서류								
운영비	재료비	○ 소모성 물품 구입비 -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비 ※프로젝터, USB, 컴퓨터, 모니터, 노트북, 녹음기, 외장하드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	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- (전자)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- 물품구입목록표(물품명,수량,단가 등)								
	제작비	○ 안내·홍보물 제작비 - 현수막, 배너, 리플렛 등 홍보 물품 제작비 ○ 인쇄비 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등	- 견적서, 비교견적서, 계약서 등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- (전자)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※ 진흥원과 사전협의 된 산출내역으로 진행								
	전문가 활용비	○ 강사료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상</th> <th>지급수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등급</td> <td>·장관·차관(급) ·대학 총장(급) ·KOSPI 상장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장(급) ·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(급)</td> <td>·300,000원 (2시간 이하) ·450,000원 (2시간 초과)</td> </tr> <tr> <td>2등급</td> <td>·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</td> <td>·200,000원 (2시간 이하) ·300,000원 (2시간 초과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-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 중복 지급 불가 ※ 지급내역서(인적사항, 강의일자 및 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필수 ※ 강사비 지급 해당강사의 계좌입금 필수 ※ 기타소득원천징수 8.8% 징수	구분	대상	지급수당	1등급	·장관·차관(급) ·대학 총장(급) ·KOSPI 상장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장(급) ·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(급)	·300,000원 (2시간 이하) ·450,000원 (2시간 초과)	2등급	·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	·200,000원 (2시간 이하) ·300,000원 (2시간 초과)
구분	대상	지급수당									
1등급	·장관·차관(급) ·대학 총장(급) ·KOSPI 상장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장(급) ·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(급)	·300,000원 (2시간 이하) ·450,000원 (2시간 초과)									
2등급	·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	·200,000원 (2시간 이하) ·300,000원 (2시간 초과)									

목	세목	적용범위	정산시 첨부 서류										
운영비	자문료	○ 외부 전문가 자문료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지급수당</th></tr><tr><td>4시간 초과</td><td>300,000원</td></tr><tr><td>3시간 초과 4시간 이하</td><td>250,000원</td></tr><tr><td>3시간 이하</td><td>200,000원</td></tr><tr><td>서면</td><td>200,000원</td></tr></table> - 자문료는 ‘수수료 집행 지침’에 근거하여 지급(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시 기타소득원천징수 8.8% 징수) ※ 자문료는 필수항목이 아니므로 필요시에만 사용 ○ 원고료 - 문화체육관광부 「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」 준용	구분	지급수당	4시간 초과	300,000원	3시간 초과 4시간 이하	250,000원	3시간 이하	200,000원	서면	200,000원	- 개인프로필(이력서) - 개인정보활용동의서 - 자문의건서(1p 이상)
	구분	지급수당											
4시간 초과	300,000원												
3시간 초과 4시간 이하	250,000원												
3시간 이하	200,000원												
서면	200,000원												
	임차료	○ 장소,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-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임차만 가능 ○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-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	- 견적서, 이용요금표, 계약서 등 -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및 카드 결제 영수증 - 임차 관련 결과물										
업무추진비	회의비	○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, 세미나, 포럼 등을 위해 소요되는 회의비 - 기준단가 : 5,000원 이내/인(1회 기준) - 산출방법 : 5,000원 × 참석인원 수 ※ 음료 및 다과(과자, 초콜렛, 캔디류)만 구매 가능 ※ 목적과 맞지 않는 진행비 사용 불가	- 회의록(회의사진 필수 첨부) - 영수증										